



노는 땅에 나무 심으면 조림비 지원 산림청, 묘목대금·조림비 현금 지원키로

다락밭 공한지 등 놀리는 땅에 나무를 심으면 묘목대금과 조림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이달부터 오는 8월말까지 다락밭, 공한지 등 농촌의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놓고 있는 토지를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해 전국 유휴토지 실태를 조사하면서 이 기간중에 유휴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겠다고 신청하면 묘목대금과 조림 보조비를 현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나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에 나무심기를 신청하면 지원한다. 조림 후 5년이내 다른 용도로의 전용 등 토지 이용계획이 없어야 하며 2년 이상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 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을공회당 주변 공한지, 마을 숲이지만 관리되지 않고 훼손된 토지, 하천변·도로변 등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한지여야 한다.

특히 이번 조사기간 중 유휴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 소유 유휴지에 자발적으로 나무심기를 희망하면, 시·군에 조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연차별로 조림계획에 반영하여 조림이 끝나는 대로 묘목대, 조림 보조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런 경우 수종선택과 조림작업은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산림과 연계해 있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 등 산림복원 효과가 큰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이번 '산림복원용 유휴토지 전국 실태조사'는 유휴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기후변화협약 및 도료의정서 발효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실시한다. 전국 유휴토지 중 상당수가 과거 산림을 농지로 개간했던 토지여서 유휴지 조림은 생태적, 환경적으로 산림복원에 가장 바람직한 활용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사시 농지로의 기능회복에 유리한 요건도 갖추고 있어 부담 없이 심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사는 시·군·구 농지부서의 유휴토지 조사자료를 근거로 시·군에서 일괄 조사하며 산림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유휴토지에 대한 연차별 조림계획을 수립, 산림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조림이 필요한 유휴토지를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